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9일, 박정하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1. 16) 상정, 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하 의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불법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및 불법비디오물의 수거 등 현행법에 규정된 행정상 강제의 절차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생략)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행정기본법」¹⁾은 행정처분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²⁾

1) 법률 제17979호, 2021.3.23. 공포, 2023.3.24. 시행

2)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이를 통해 각종 행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사·공통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국민과 일선 공무원 등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음.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의 법 원칙(제2장)을 비롯해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 행정작용(제3장) 일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위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개별 법률의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요 행정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중 제70조³⁾에 규정된 ‘행정상 강제’⁴⁾ 관련 사항을

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⑧ (생략)

4) ‘행정상 강제’란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권이 직접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위를 의미함. 「행정기본법」 제30조에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강제’⁵⁾에 해당하는 불법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제1항) 및 ‘즉시강제’⁶⁾에 해당하는 불법비디오물의 수거·폐기(제3항)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증표 제시’ 관련 규정(제6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를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또는 제33조(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관련 규정]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⁷⁾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명시된 행정상 강제의 종류로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가 있음.

- 5)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3호).
- 6)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을 의미함(「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5호).
- 7)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특히,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명시할 경우 보충성·최소성과 같은 행정상 강제요건의 요건(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비롯하여 즉시강제 시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한 절차(제33조제2항) 등,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적법절차 원칙’ 관련 사항 등의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